365가족안심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1)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연령 등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만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위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멸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대중교통승용구 탑승중 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대중교통승용구 탑승중 상해로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자동차 교통상해로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기타사고 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기타사고로 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상해사고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산출기준 : 보험기간 1년, 직업급수 1급(사무직)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일시납)
대중교통승용구 탑승중 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천만원	10,870원
자동차 교통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천만원	
기타사고 상해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천만원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가입이 제한되는 사람이 있는지?**
A)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 운동참가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이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Q)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보험기간 중 계약의 변경 가능여부?
A)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해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